

【 별지 】

VI.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사업 보통약관(규칙 제2조1항 관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합니다)의 중대재해배상책임 공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공제자: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2. 피해자: 종사자 및 일반시민을 말합니다.
3. 종사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 또는 나 의 관계가 있는 자
4. 사업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하는 자를 말합니다.
5. 경영책임자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통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6. 재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 나.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신체장해를 입히는 우연한 사고
7. 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2조에서 정의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8.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9.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합니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10. 공중이용시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2조에서 정의한 공중이용시설을 말합니다.

[공중이용시설]

아래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합니다.

-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11. 공중교통수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2조에서 정의한 공중교통수단을 말합니다.

[공중교통수단]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12. 공제등록증권: 공제등록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제회가 회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13. 배상책임: 공제등록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14.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민사상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배상금을 말합니다. 단, 세금·벌금·과태료·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금·배액배상금(이에 유사한 것을 포함합니다) 및 피공제자와 타인과의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을 경우에 그 약정에 따라서 가중된 손해배상금(계약상의 가중책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5. 1회의 공제사고: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생긴 사고로서 피공제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 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16. 보상한도액: 공제회와 회원 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11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보험사가 책임 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17. 자기부담금: 공제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부담 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18. 보험금 분담: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각종 공제회 및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의 보상 한도액의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19. 대위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20. 연단위 복리: 보험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21.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 하는 이율로서 보험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공제회비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22. 공제기간: 공제등록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23. 영업일: 공제회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24. 범죄행위: 범죄행위라 함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및 상법 또는 독점금지법 등의 법률과 같이 특별 처벌규정에 따른 범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범죄행위에는 형(刑)을 받아야 하지만 집행유예 등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시효의 완성 등에 따라 형을 받게 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제3조(적용범위 및 기준) 이 공제약관은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사업주·경영책임자등·법인 또는 기관을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등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4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로부터 공제기간 중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피공제자가 민사상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제1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제1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등록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공제회비. 그러나 공제회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공제자가 제1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보험사는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그러나 공제등록증권상에 소급보장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소급보장일자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손해배상 청구일자) ①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공제자와 공제회 및 보험사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쪽의 손해배상청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가 접수한 경우에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사실을 공제회 또는 보험사에 알린 날을 손해배상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로 봅니다.

2. 어느 하나의 재해에 대한 다수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중 최초로 제기된 날을 모든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일자로 봅니다.

3. 다만, 피공제자 또는 공제회 및 보험사가 손해배상청구를 받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공제회 및 보험사에 알릴 날을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일자로 봅니다.

제6조(소송비용,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등) ① 보험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해결에 앞서 미리 제4조(보상하는 손해)제1항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② 피공제자는 미리 보험사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거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③ 피공제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한도로 보험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보험사는 이를 환수하여야 합니다.

제7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보험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공중교통수단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선오염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9. 직, 간접을 불문하고 피공제자의 컴퓨터시스템, 네트워크 인터넷 사이트 등의 불완전가동 및 제3자의 침투행위로 기인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채용, 고용, 해고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부당한 행위로 기인한 배상책임
11. 벌금, 과태료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공제자와 제3자 간의 계약 상 발생하는 피공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13.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소음, 티끌, 먼지, 분진, 석면에 기인하여 제기된 배상책임
15. 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아닌 경우. 단, 피공제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도, 과거 피보험단체의 임직원으로써 수행한 업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6. 재물손해, 재물의 분실 또는 도난(그로 인한 재물의 사용불능 손해를 포함합니다)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재물손해]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 1)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 2)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 3)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② 보험사는 피공제자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된 사유가 아래 각 목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3.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재하도급하는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는 경우
5.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대상물질을 허가받지 않고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경우

제8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공제회 또는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4.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사건에 관한 고소장·고발장·진정서 접수, 입건, 출석요구 등 통지를 받은 경우

②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공제사고의 발생을 보험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피공제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4. 보험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10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보험사는 제9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공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험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공제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보험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험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공제자가 해당 보험금 지급의 목적이 된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해자로부터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피공제자는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과 중복되는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보험사는 이를 환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환·환수하는 금액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1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보험사는 1회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또한 공제등록증권에 보상비율이 기재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부분에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2.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2호 '다'목,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 ② 공제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보상총액은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때에 제8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본 공제등록의 공제기간 중에 보험금 청구가 제기되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에 포함합니다.
- ③ 보험사는 제2항의 총 보상한도액을 적용할 때에 아래의 경우를 불문합니다.
1. 피공제자의 수
 2. 손해배상 청구의 건수 또는 제기된 소송의 수
 3.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수

제12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보험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3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 ③ 피공제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다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3조(보험금의 분담) ①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보험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본 공제등록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 ② 본 공제등록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공제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공제등록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보험, 자가보험, 보상협약, 공제계약 등을 포함하여 기초보험, 초과보험, 비례보험 등 보험금의 분담방식을 따지지 않습니다.)이 본 공제등록에 대한 우선 적용 계약인 경우, 다른 계약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피공제자가 실무담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공제등록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보험, 자가보험, 보상협약, 공제계약 등을 포함하여 기초보험, 초과보험, 비례보험 등 보험금의 분담방식을 따지지 않습니다.)이 본 공제등록에 대한 초과보험일 경우에는 본 공제등록을 우선 적용하여 피공제자가 실무담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⑤ 피공제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보험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4조(손해방지의무)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험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보험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해결)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사가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보험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사가 제 1 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사의 요구가 있으면 회원 및 피공제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보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보험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사의 요구가 있으면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험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6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보험사는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사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보험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는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보험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공제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공제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보험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7조(대위권) 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보험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공제등록의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보험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회원 또는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3관 회원의 등록 전 알릴 의무

제18조(등록 전 알릴 의무)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공제등록 시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제19조(등록 후 알릴 의무) ① 공제등록 이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회원이나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공제회에 알리고 공제등록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공제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4. 공제등록 후 새로운 위험을 본 공제로 담보 받고자 할 때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공제회비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회비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공제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 또는 보험금을 청구한 피공제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제회 또는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회원 또는 보험금을 청구한 피공제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험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회원 또는 보험금을 청구한 피공제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0조(양도) 공제 목적의 양도는 공제회의 서면동의 없이는 공제회 및 보험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공제회가 서면 동의를 한 경우 공제등록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공제회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제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공제등록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사기에 의한 등록)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등록이 성립되었음을 공제회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2조(보고연장보상기간의 설정 대상계약) 공제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제24조(자동보고연장보상기간)에 규정된 보고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여 드리며, 추가 공제회비를 납입하면 제25조(선택보고연장보상기간)에 규정된 보고기간 연장배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1. 공제회비 미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공제등록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2. 공제회가 이 공제등록을 배상청구 기준으로서 이 공제등록증권상의 소급보상일자 이후의 날짜를 소급보상일자로 하는 등록으로 갱신 또는 대체했을 경우
3. 공제회가 이 공제등록을 배상청구 기준이 아닌 등록으로 대체했을 경우

제23조(보고연장보상기간의 보상 특칙) 공제회가 보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 다음의 조항을 추가 적용합니다.

1. 보고연장보상기간내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는 공제기간 만료일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소급보상일자와 공제기간 만료일 사이에 행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합니다.
2. 보고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보상한도액이 복원 또는 증가되거나 공제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4조(자동보고연장보상기간) ① 자동 보고연장기간이라 함은 아래의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습니다.

1. 공제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간.
2. 공제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이 자동 보고연장보상기간은 공제등록증권상의 소급보상일자부터 공제기간 만료일 이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 공제회 또는 보험사에 통지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 자동 보고연장보상기간은 그 손해배상 청구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다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공제자가 제2호에 따라 공제회 또는 보험사에 사고를 통지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제8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1항의 내용에 준용하여 서면으로 공제회 또는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이 자동 보고연장보상기간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25조(선택보고연장보상기간) 선택적인 보고연장기간 배서가 발행된 경우 그 보고연장보상기간은 이 공제기간 만료일로부터 무기한이 됩니다. 그러나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공제회는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공제회는 보고연장보상기간 배서를 발행합니다.

1. 공제회에 대하여 서면으로 공제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 소정의 납입기일에 추가공제회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기일까지 추가공제회비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연장보상기간 배서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공제회비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었을 때에는 보고연장보상기간 배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4관 공제등록의 성립과 유지

제26조(공제등록) 공제등록은 공제회 회원이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공제등록신청과 공제회의 공제등록으로 이루어집니다.

제27조(약관의 제공) ① 공제회는 공제등록을 신청한 회원에게 약관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② 공제회는 홈페이지 등에 약관을 게재하여 회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28조(등록의 무효)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공제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 등록은 무효로 합니다.

제29조(등록내용의 변경 등) ① 회원은 공제회와 협의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협의내용은 문서 등으로 알리거나 공제등록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회원, 피공제자
2. 보상한도액, 공제회비 등 기타 등록의 내용

② 공제회는 회원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등록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41조(공제회비의 환급)에 따라 공제회비를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제30조(타인을 위한 공제등록) ① 회원은 타인을 위한 공제등록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공제회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공제등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공제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공제등록에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회원이 그 타인에게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회원은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험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등록의 해지 및 공제회비의 환급

제31조(등록의 해지) ① 회원은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등록의 경우에는 회원은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공제 등록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회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들 중 하나라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③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공제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8조(등록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9조(등록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등록 후 알릴 의무를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회는 등록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공제회가 등록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공제회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공제회비 등을 받은 때 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등록일부부터 3년이 지났을 때

⑤ 제3항에 의한 등록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제회 및 보험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공제회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등록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제등록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 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공제회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해지한 경우 공제회는 그 취지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제33조(공제회비의 환급)에 따라 공제회비를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공제회비의 환급) ① 이 공제등록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공제회비를 돌려드립니다.

1.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공제회에 납입한 공제회비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회비

2.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공제회비를 뺀 잔액. 다만, 회원,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공제회비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공제회가 제21조(사기에 의한 등록), 제31조(등록의 해지) 또는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등록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6관 분쟁의 조정

제34조(관할법원) 본 공제등록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사와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공제회비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6조(약관의 해석) ① 공제회 및 보험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회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공제회 및 보험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공제회 및 보험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회원이나 피공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7조(개인정보보호) ① 공제회 및 보험사는 이 등록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본 공제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회 및 보험사는 이 공제의 등록,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회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회, 보험사는 공제등록 및 사고처리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38조(준거법) 본 공제등록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특별약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의 보장 대상은 피공제자 중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보통약관 제1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보통약관 제1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등록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공제회비. 그러나 보험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공제자가 보통약관 제1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보험사는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그러나 공제등록증권상에 소급보장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소급보장일자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보험사는 제1항에 의한 보상에 있어서, 보통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14호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및 제7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면책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중대재해로 인한 피공제자의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손해를 본 특별약관에서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사는 법인 또는 기관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중대사고 형사방어비용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의 보장 대상은 피공제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법인, 기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피공제자가 소속된 단체를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로 인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변호사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형사방어비용(이하 '형사방어비용'이라 합니다)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위반 혐의로 피공제자가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는 사건(이하 '사건'이라고 합니다)에 대해 공제기간 중 최초로 개시된 형사절차가 발생하여 피공제자가 실제 부담하는 형사방어비용을 '1사건'마다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피공제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소급보장일자 이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사건이며,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또는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되고 주문이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인 경우에 한합니다.

② 제1항의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개시된 형사절차」라 함은 피공제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고발장·진정서 접수, 입건, 출석요구 등 통지를 최초로 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최초로 개시된 형사절차 이전에 손해배상청구가 최초로 제기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5조(손해배상 청구일자)를 수리일자로 합니다.

③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피의사실이 다수여서 분리결정된 경우, 보험사는 제1항에서 산출한 보상책임액에서 피공제자에게 해당되는 전체 피의사실 결정건수에 대한 불송치 결정 또는 불기소 결정 중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처리된 결정 건수의 비율을 아래에 따라 계산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보상책임액} \times \frac{\text{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결정('혐의없음', '죄가안됨') 처리된 결정 건수}}{\text{전체 피의사실 결정 건수}}$$

(제①항에서 산출된 금액)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아래 심급 구분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무죄가 선고된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실제 부담한 형사방어비용을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피공제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심급별로 판결이 무죄로 선고된 경우라도 상급심(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사가 보상하는 소송사건은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 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는 소송사건에 한합니다.

심급구분	형사사건	사건별 부호
1심	형사 1심 합의사건	고합
	형사 1심 단독사건	고단
항소심	형사항소사건	노
상고심	형사상고사건	도

(형사소송법에 정한 파기환송(이송)심, 재심, 비상상고심, 약식절차 등은 제외합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급심(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판결이 무죄로 선고된 경우에는 이전 심급 중 무죄판결 선고가 아니어서 보상받지 못하였던 피공제자가 부담한 형사방어비용을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제1항에서 정한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해 형사방어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그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형사방어비용에 대하여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 ⑦ 보험사는 종국 판결 결과의 변동에 따라 미지급된 보험금을 추가 지급 또는 기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형법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의 사유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중대재해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공제사고가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로 기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다음의 각 호에 기재된 용어는 이하의 정의에 따릅니다.

1. 위기: 위기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공표된 것을 말합니다.
2. 위기관리실행비용 : 피공제자가 해당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부담한 아래에 기재된 비용으로서, 필요하고도 불가결하다고 보험사가 사전에 서면에 의해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단, 해당 위기의 발생 후 90일 이내에 피공제자가 부담한 비용에 한합니다)
 - 1) 위기관리컨설팅보험사(위기 이후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법률 자문, 안전관리 강화 등을 컨설팅 해주는 보험사를 말합니다)가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피공제자에게 제공하는 위기관리서비스에 의해 발생한 비용(위기관리컨설팅보험사에 대한 보수를 포함합니다.)
 - 2) 사과문의 작성 비용 및 송부 비용
 - 3) 신문 및 TV에 사죄광고를 게재하는 비용
 - 4) 기자회견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
 - 5) 위로금·위문품 비용

제3조(보상하는 손해) 보험사는 공제기간 중에 손해배상청구가 최초로 제기된 재해로 인한 위기에 대하여 최초로 생긴 위기에 대하여 해당 위기에 기인해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위기관리실행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사는 다음의 각 호에 기재된 위기에 기인한 위기관리실행비용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원인의 직, 간접을 불문하고, 전쟁(선전의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변란, 폭동, 노동쟁의 또는 정치적 소요에 기인한 위기
2. 원인의 직, 간접을 불문하고,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기인한 위기
3. 소급보장일자 이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위기
4.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임원이나 임원이었던 사람(기명피공제자 또는 그 자보험사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제외합니다)의 고의에 기인한 위기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보험사가 이 특약 조항으로 보상하는 보험금의 액수는

1회의 위기에 대하여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위기관리실행비용의 금액에서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공제기간 중 지급보험금의 총액은 공제기간 중에 발생하는 위기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위기관리실행비용 보상한도액이 총보상한도액이 되며, 보험사가 이 공제등록으로 보상하는 금액은 보통약관 및 그 외의 특별약관으로 보상하는 금액의 합계로서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6조(1회의 위기) ① 이 특약 조항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직전의 위기와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에 의한 위기는 발생한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1회의 위기로 간주합니다.

② 1회의 위기에 대한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는 최초의 보험금의 청구가 이루어졌을때에 모두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최초의 보험금의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의 공제등록사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7조(위기의 통지) ① 이 특약 조항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8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의 규정에 관계없이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위기의 발생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사에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위기가 발생한 날
2. 위기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내용
3. 위기의 발생 형태
4. 그 외 보험사가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

②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또는 제출 서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기록을 했을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공제기간과 지급 책임의 관계) 이 특약 조항에 대하여, 보험사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보험사에 대하여서, 제7조(위기의 통지) 제1항에 규정하는 통지를 실시했을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대체되는 규정)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13조(보험금의 부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손해액」을 「위기관리실행비용의 금액」으로 대체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공중교통수단 보장확대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공중교통수단으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오염손해 보장확대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사는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및 오염제거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2. 급격한 사고가 아닌 오염물질이 서서히,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민사상 배상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공제기간 중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17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중대()재해만을 위한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2조 제1호의 중대재해에 관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른 중대재해를 중대()재해로 한정합니다.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추가특별약관

- ① 보험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피공제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사는 상기 제1항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락 등,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상기 제1항, 제2항, 제3항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보험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 ①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 ②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감염병 면책 특별약관 (LMA5399)

본 특별조항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감염병 면책

보험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감염병 또는 감염병에 대한 (실제 또는 인식된) 공포 및 위협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야기, 기여, 기인되거나 원인 또는 연관이 되어 발생하는 모든 실제 또는 추정 손실, 배상책임, 피해보상, 상해, 병, 질병, 사망, 의료 비용, 방어 비용, 일반 비용, 경비 또는 기타 비용은 본 등록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손실 등의 발생에 기여하는 다른 원인이 동시에 혹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감염병이란 어느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어떠한 물질 또는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모든 질병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1. 해당 물질 또는 매개체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나 그 변종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살아있다고 인식되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2.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형태에는 공기 중 전염, 체액을 통한 전염, 물체의 표면 또는 고체, 액체, 기체 등의 물체를 통한 전염, 또는 유기체 간의 전염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3. 해당 질병, 전염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 상해, 질환 및 정신적 피해 또는 인간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또는 재물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테러행위 면책

보험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됩니다.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시키고자 하는 의도
 -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상기 1항 또는 2항 이외에 본 특별약관은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 단,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약관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보기술 특별약관(사이버위험 보상제외 특별약관)

이 공제등록증권에서 보장하는 재물손해는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히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는 재물손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손실 또는 손해들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1.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와 같은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그러나 이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발생한 보장하는 물리적 손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보장합니다.
2.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유용성, 사용범위, 또는 접근성의 손상으로 야기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야기된 기업휴지손해